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안건번호 "별지와 같다."

안 건 명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"별지와 같다."

의결연월일 2013. 8.21.

주 문

o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 처리의 절차를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.

이 유

1. 일반현황

- o 각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접속, 회선설비 임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.
 - '13년 5월말 각 피심인의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92천명이며, '12년말 전체 매출액 현황은 1,405억원을 나타내고 있다.

※ 관련자료 출처 : 사업자 제출자료

2. 사실조사 결과

o '10년부터 '13. 5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입시에 약정할인, 손해배상, 최저보장속도 등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았으며, 홈페이지에도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<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자 현황 >

단위 : 명

'10년	'11년	'12년	'13년 5월	계
27,013	31,882	32,969	16,021	107,885

※ 자료 출처 : 사업자 제출자료

3. 위법성 판단

o 피심인이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행위, 홈페이지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.

4.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권고

o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처리의 절차를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.

5.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계획서 제출

o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6. 개선이행 결과의 제출

o 계획서상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개선이행 결과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7. 결론

상기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13. 8.21.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(인)

부위원장 김 충 식 (인)

위 원 홍 성 규 (인)

위 원 김대희(인)

위 원 양문석(인)

- (1) 안건번호 제2013 30 108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42) 피심인 : (주)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(대표이사 이한담) 피심인 주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2 씨엠비빌딩
- (2)안건번호 제2013 30 109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43) 피심인 : (주)씨엠비동서방송(대표이사 황태익) 피심인 주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8-50 3층
- (3)안건번호 제2013 30 110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44) 피심인 : (주)씨엠비대전방송(대표이사 김동수) 피심인 주소 : 대전시 중구 선화동 95-3
- (4) 안건번호 제2013 30 111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45) 피심인 : (주)씨엠비광주방송(대표이사 황태익) 피심인 주소 :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11-2
- (5)안건번호 제2013 30 112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46) 피심인 : (주)씨엠비전남방송(대표이사 이한성) 피심인 주소 :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95-12
- (6) 안건번호 제2013 30 113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47) 피심인 : (주)씨엠비대구수성방송(대표이사 황태익) 피심인 주소 : 대구시 동구 신청동 351-4
- (7)안건번호 제2013 30 114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48) 피심인 : (주)씨엠비대구동부방송(대표이사 황태익) 피심인 주소 : 대구시 동구 신청동 351-4